

제1회 2012년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포럼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어디까지 왔나



일 시 | 2012년 6월 26일(화) 11:00 ~ 18:00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1층 중회의실

주 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Jeju Development Institute



# 프로그램 순서

## 1부 Preview Forum

사회 : 정영태(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11:00~12:00

《 Press Forum 》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 2부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Governance Forum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어디까지 왔나

사회 :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팀장·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13:30~14:00

《 등 록 》

14:00~14:15

《 개회식 》

환영사 : 양영오(제주발전연구원 원장)

14:20~15:00

《 제1주제 》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과 향후 과제  
발 표 : 이갑숙(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토 론 : 고보선(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경숙(제주여민회 정책위원)

15:00~15:20

《 Coffee Break 》

15:20~16:00

《 제2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  
발 표 :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토 론 : 강수영(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16:00~16:30

《 종합토론 》



# 목 차

## 《 제 1 주제 》

**발제**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과 향후 과제

이갑숙\_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 1

토론 1 고보선\_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별지

토론 2 강경숙\_제주여민회 정책위원 ..... 별지

## 《 제 2 주제 》

**발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

정영태\_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센터장 ..... 49

토론 1 강수영\_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별지

토론 2 김경미\_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 별지



《 제1주제 》

#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과 향후 과제



이 갑 속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과 향후 과제

이갑숙\_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 I. 들어가며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4차례의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의 추구와 성주류화는 전 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세계 여성대회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평등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제로 성 주류화를 채택·선언했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엔은 성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통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성주류화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성주류화는 성평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주류 발전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성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공무원의 성인지력 교육 등 법적·행정적인 책무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따라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성별영

향분석평가는 2004년 9개 기관의 10개 과제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 85과제, 2006년 187과제, 2007년 720과제, 2008년 1,531과제, 2009년 1,908과제, 2010년 2,401과제, 2011년에는 2,957개 과제를 수행하여 7년간 총 9,916과제를 수행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못지 않게 증가한 것은 참여 기관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급증하였다. 2005년 중앙정부가 37개의 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한데 이어서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 시도의 교육청까지 참여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기관수는 2004년 30개 기관 2011년에서 2011년 27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0%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정부가 제도화를 피하였다면 지방정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갑숙, 2009).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평가 과제수의 급속한 증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자체 평가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 부적절한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 부재, 정책환류 개선 효과 미비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이갑숙,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착에 관한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문적인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행의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표체계에 의한 분석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의 효과는 미흡했다. 특히 정책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부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희정, 이갑숙, 2010).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범위 및 단위, 대상과제 선정기준, 대상과제 수행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16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한편,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성주류화 실행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차원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발전과정

###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가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여성대회에서 UN이 공식 채택한 행동 강령으로 성 평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성 주류화는 사회발전과정에 있어 성(gender) 관점이 투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수립,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여성의 삶의 경험과 특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이갑숙, 2005). 이러한 성 주류화 전략의 도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분석, 성분리 통계 생산, 성평등 교육 및 훈련, 여성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젠더관점의 정책 분석, 그리고 법, 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계, 여성계, 행정실무 현장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정책도구로 다양한 용어들이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부, 2005; 김양희·김경희, 2006; 김양희 외, 2006a; 김양희 외, 2006b), 성분석(김재인 외, 2001; 이수연 외, 2003), 성별영향 분석·평가(김혜란 외, 2003; 박성정 외, 2003; 김미란 외, 2004; 김혜란 외, 2004; 박재규 외, 2004; 신동일 외, 2004; 오은진 외, 2004; 이영세 외, 2004), 젠더 관점의 정책 분석(이갑숙 외, 2004)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성분석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이다.

그러다가 2005년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 제도의 익숙함을 빌어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여성부, 2005).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분석은 성별영향에 미치는 것에 대해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사용되어 온 맥락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로 EU,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European Commission, 2001; Himmelweit, 2002), 성분석은 주로 UN, World Bank 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UN, 1995; UNDP, 2001).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분석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성을 드러내고 해결 대안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목적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각각이 포함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로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성분석은 이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관계, 정부정책, 시장, 지역공동체 뿐 아니라 가구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를 없애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 및 불평등성을 드러내고 해결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UNDP, 2001; World Bank, 2005).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분석은 “모든 이들이 성에 관계없이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도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즉 정책의 성 중립적(gender-neutrality)가정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특성 그들의 사회적 현실, 삶의 기대들, 경제적 상황 등에 민감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이다(한국여성평등진흥원, 2009).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와 삶의 경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여성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여성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수행해 온 노동과 활동의 생산성을 인정하며, 여성들이 지닌 욕구(needs)와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도시, 농촌, 근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계층별·지역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정책수행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수용하고 성·연령·직업·계층·학력·지역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둘순(2007)은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새롭게 개발되는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들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서 모든 정책이 성평등(gender equality)하게 계획·집행·평가되도록 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보다 여성가족부의 정의를 바탕으로

로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성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표 1> 양 제도의 개념 비교

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재정법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개념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본연구의 개념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이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를 미리 분석하여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과정이다
비교	성인지적 관점 투영	예산 투입 및 반영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배경

세계 각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UN의 1995년 제4차 북경여성회의라 할 수 있다. 북경대회에서는 성 평등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제로 성 주류화를 채택·선언했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촉구해 왔다. 성인지적 관점의 도구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것을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성 주류화의 전략도입과 함께 핵심 추진도구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부여 받았다. 이는 북경행동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정부 및 기타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UN, 1995).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정부부처와 일반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에 대하여 여성시민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가부장적 문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김둘순, 2007).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 양성평등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새로운 정책은 물론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잠재적) 차별효과를 예측하고, 평가·분석하여 차별을 개선할 정책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다(김양희, 2001; UNDP, 2001; Himmelweit, 2002).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부정책의 의사결정이 법령제정 또는 기존 정부정책이나 서비스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성평등 기회 및 성주류화 확장을 위해 좀 더 나은 정책 대안들을 찾아 최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며, 셋째 관련정책이나 법령 등에 있어서 성별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어야 하고, 질문되어야 하는지를 찾아내어 정책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민감하도록 하고, 넷째,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부정책,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UNDP, 2001; European Commission, 2003c; Office for Women and The University of Adelaide, 2005; 김둘순, 2007).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목적과 배경은 우리나라도 유사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전략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해서 이해하는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경희, 2005: 277-278).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단지 남녀 간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의 성 평등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김경희 외, 2008). 첫 번째, 기존의 정책구조가 남성위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남성 공무원들의 젠더의식이 낮으며 외부의 전문가 중 여성비율이 작고 지위도 낮아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이 여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 분리된 통계의 구축과 활용이다. 성 분리 통계는 조직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정책의 혜택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Rees는 성 분리 통계만을 강조하였으나 사실은 성 인지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 뿐 아니라 정책 이슈와 관련되는 여성 또는 남성의 특수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성 인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구주를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하는 식의 통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통계, 여성 비정규직이나 여성 빈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통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전 세우기이다. 성 주류화의 마지막 단계가 주류의 전환임을 상기할 때, 결국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성평등한 참여를 중시한다. 물론 여성의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측면(rights-based approach)에서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더 나아가서 여성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의 구조와 문화, 정책전략의 채택과 서비스 전달방식 등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참여와 민주화이다. 그동안 여성은 정책 집행을 위한 동원 대상 또는 수혜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정책의 주체로서의 참여 장치는 미흡하였다.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성 주류화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다섯째는 의식제고 및 훈련이다. 특히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의식과 기술을 함께 다루는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훈련 또는 젠더훈련은 정책 기획과정에서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활용하고, 정책 이슈를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며, 민주적인 참여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에, 정책 담당자들이 주류화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훈련이 관건이다.

여섯째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절차이다. 주류화는 한 번에 이루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과제를 개발하고 관계 집단들의 실천을 위한 지침

을 마련하고 책무를 설정하며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김양희 외, 2006: 14-15).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일반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성 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분석기법과 방법론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발전단계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과정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의 단계를 인식단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단계를 도입단계, 정부의 예산과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정책이나 단위 업무를 수행한 단계를 정착단계,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생활공감 정책으로 국민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단계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인식단계(2001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이며, 우리나라의 여성문제를 성차별적 사회제도의 개선과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총체적·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미의 여성정책 개념은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 특히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국가정책의 주류로서 통합되도록 하는 여성의 주류화가 강조되었고,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에 성 주류화가 여성정책의 기조로 명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말 국내의 성인지력 향상교육(gender training)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의 성 분석, 성별영향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1999년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 결정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것은 캐나다 여성지위청의 [Gender-based analysis: A guide for policy making]을 번역한 것으로 젠더의 개념적 정의와 이에 기초한 정책분석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하고 젠더에 기초한 분석 및 정책개발 과정과 분석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해숙 외의 「성 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에서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될 교과서의 교육내용이 양성평등하며 교육과정의 운영 또한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01년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 보건복지부의 홍보자료를 대상으로 성별 등장인물과 인물비중, 직업·지위와 성별 역할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홍보자료 성 평등 지침」을 개발하였고, 「보건정책과 여성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안내」라고 하는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보건복지부 관련법의 문제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연구(2000)」, 「보건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2000)」,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과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2001)」 등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성분석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2002)」 및 「정책의 성분석 모형개발(2002)」이 발간되었다.

2001년 여성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정부부처에 배포하였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 책임, 자원 등이 정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분석하고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을 통해서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 2) 도입단계(2002~2004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기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02년 12월에 개정하여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를 신설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여성부 장관에게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8조는 성별영향분석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9조 ①항은 여성부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9조 ②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③항은 여성부 장관은 그를 종합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의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 정부는 2004년 정부는 법무부 등 9개 기관이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0개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사업이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 3) 정착단계(2005~ )

2005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총 55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85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2006년도에는 적용대상을 넓혀 기초단체까지 포함하여 모두 187개의 기관에서 31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시도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하여 278개 기관에서 720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294개 기관(시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참여)에서 1,524개 과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공무원의 자체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심층평가과제와 자체평가과제로 이원화되어 심층평가는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편, 자체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목적이 모든 행정기관의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성 주류화에 있는 만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행정기관 정책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는 2006년에 예산편성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하기 위해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작성지침’에 각 행정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였다.

법제처는 2006년에 ‘법제업무 심사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안’에 법령입안 심사 시 성별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에 ‘2007년도 교육훈련지침’에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 부처 주요시책에 포함시키고,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교과목을 반영하였다(여성가족부, 2007a).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2006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지 평가항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를 포함시켰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2008년 정부업무평가의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성과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은 통계법(제18조) 개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

는 경우,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사항에 대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07c).

또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07b). 예컨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법적 구체화를 위해 단일 법안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의 제정, 평가대상 정책 및 평가대상 기관 확대, 전문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성별통계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6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이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2009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정착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기관이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분석 향상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이 중앙과 지역 평가지정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간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제도화됨에 따라 현재 각 부처에서 234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기 위해서 기 분석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이미 정착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발전단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발전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정책개선 실적에 대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가 주민들에게 생활 공감 정책으로 다가가는 정도가 될 경우 발전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낮은 상황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발전단계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단계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성과관리 지표로 선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정책개선의 효과가 드러

나야 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발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의 성평등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며, 여성의 권한지수가 높아져 선진인류국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과정

단계	연도	법·제도적 기반	정부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연구
인식 단계	1999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주관 : 2개 과제 (1999, 2000)</li> <li>· 여성부 주관 : 1개 과제(2001)</li> <li>· 농림부 주관 : 1개 과제(2001)</li> </ul>
도입 단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여성발전기본법&gt; 개정(2002)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주관 : 1개 과제</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gt; 개정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교육), 제8조(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li> <li>·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부 주관 : 2개 과제</li> <li>· 서울시 주관 : 1개 과제</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책임관회의 논의</li> <li>· 국무회의 논의</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마련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부 주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들이 10개 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실시</li> <li>· 경기도 주관 : 1개 과제</li> </ul>
정착 단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마련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공무원 참여 평가, 여성가족부 주관 : 37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이 85개 과제 수행 (8개 주요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들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포함)</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마련 및 보급</li> <li>· 행정자치부 &lt;국정시책합동평가&gt;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포함</li> <li>· 주요제도와 연계추진</li> <li>※ '0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06년 법령 입안 심사기준안 반영</li> <li>※ &lt;국자재정법&gt;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지자체로의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주관 : 중앙·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시범), 187개 기관 공무원이 314개 과제수행 (11개 주요정책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포함)</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마련 및 보급</li> <li>·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2008~20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정착정도확보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참여, 여성가족부 주관 : 총 273개 기관 참여, 688개 과제 수행</li> </ul>

단계	연도	법·제도적 기반	정부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연구
정착 단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마련 및 보급</li> <li>&lt;여성발전기본법&gt; 개정(2008) 제10조 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신설</li> <li>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외 5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 예산 작성 시범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총 295개 참여 총 1,531과제 수행</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마련 및 보급</li> <li>성인지 예산서 작성 (234개/양성평등사업 85, 성별영향분석 사업 149개)</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시행</li> <li>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337개 기관 참여에 1,835과제 수행</li> <li>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관련</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국무회의 통과</li> <li>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국무회의 통과</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보고서 작성</li> <li>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든 부서 1과제 이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292개 기관 참여에 2,401 과제 수행</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실적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등 평가의 효과성 추구</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컨설팅</li> <li>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국회 계류</li> <li>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9.15)</li> <li>성인지 예산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291개 기관 참여에 2,9575과제 수행</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2400과제 정책개선 분석</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2,975가제 의제분석 - BRM체계 기준분석</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령 제정(3.16)</li> <li>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운영</li> <li>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지정 - 전담인력 배치(책임연구원급)</li> </ul>	



성별영향분석 평가	중앙정부	2001년 이전	2002~2004년	2005년~	
	지방정부	2004년 이전	2005~2007년	2008년~	
성인지예산	중앙정부	1998~2005년	2006~2009년	2010년~	
	지방정부	2009~2010년	2011~2012년	2013년~	

<그림 1> 양 제도의 제도화 과정 비교

<표 3> 양제도의 추진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성인지 예산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	2002.12	
9개 기관(10과제) 시범사업 실시	2004. 4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대상 본격실시	2005. 3	
기초자치단체 실시	2006. 3	국가재정법 제정
시도 교육청 대상기관 포함	2007. 3	
	2007.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포함
	2008.10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채택
	2008.12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 시범작성
	2009.12	2010년 정부성인지 예산서 작성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공포('11.3.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2011. 9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11.9.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12.3.16)	2012. 3	
	202.12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

###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체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법적근거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상과제와 참여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교육청까지 참여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전문가 컨설팅,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했으나 정책의 개선효과는 미흡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범위 및 단위, 대상과제 선정기준, 대상과제 수행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실질

적인 정책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규정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3조(분석평가의 시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상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기관 법제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전에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항에 의한 분석평가지침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전년도 분석평가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은 당해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한다.

**제4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 정책을 확정하고, 분석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평가 업무의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개발 지원.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지원.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지표 및 분석기법. 넷째,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다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 DB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여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관련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일곱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제공. 여덟째, 성인지 예산 관련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지원. 아홉째,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 개선 지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 개선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규정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석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의한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발전기본법 ▶

□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 조항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30]

**제10조의 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 지원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고나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30]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는 중앙 1개, 지역 12개로 전국에 13개소가 지정 운영되어 있다.

<표 4>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

지역	평가센터명	지정일
합 계	13개 센터	
중 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 5.10
서 울	서울여성가족재단	'10.11. 5
경 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08. 5.10
충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8. 5.10
경 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0. 1.15
강 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09. 6. 1
부 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8. 5.10
전 남	전남여성플라자	'10.11. 5
광 주	광주여성재단	'11. 9. 5
대 전	대전발전연구원	'12. 3.20
인 천	인천발전연구원	'12. 3.20
경 남	경남발전연구원	'12. 3.20
제 주	제주발전연구원	'12. 4.

## 2. 대상과제 범위

### 1) 대상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든 공공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이 도입되어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남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영역은 정부의 모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과제는 사업 뿐만 아니라 법률, 기본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면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한 정책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대상과제의 범위 >

- 자치법규 : 제·개정의 모든 자치법규
- 기본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사 업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대상정책	선 정 기 준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규</li> </ul>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예) 공원, 도로, 주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li> </ul>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대상 사업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개선 사업 예) 공원, 도로, 주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li> </ul>

## 2) 제외사업

### <분석 제외 대상>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 직제, 기록물 등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계획, 사업
  -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
  - ※ 여성농어업인육성 사업 등

## 3.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적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의무적용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평가기획, 평가운영, 제도개선, 평가조합 등을 총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의제 발굴 및 의제별 지정과제를 선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의제별 심층분석 및 개선상 도출, 평가결과와 정책개선방안 점검 및 지원,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반을 주도하고 관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내 총괄부서와 평가수행부서로 구분하고 있다. 총괄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각 기관 내 평가 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과제별 정책개선을 유도하여 실적을 제출한다. 또한 과제담당자와 컨설턴트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장, 시도교육청은 평가 총괄부서가 속한 실·국의 장이 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수행 부서는 평가수행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평가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평가보고서 작성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을 실행하고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실적을 작성하고 있다.

한편, 총괄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위원회는 부기관장(차관, 부지사, 부시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국장급 당연직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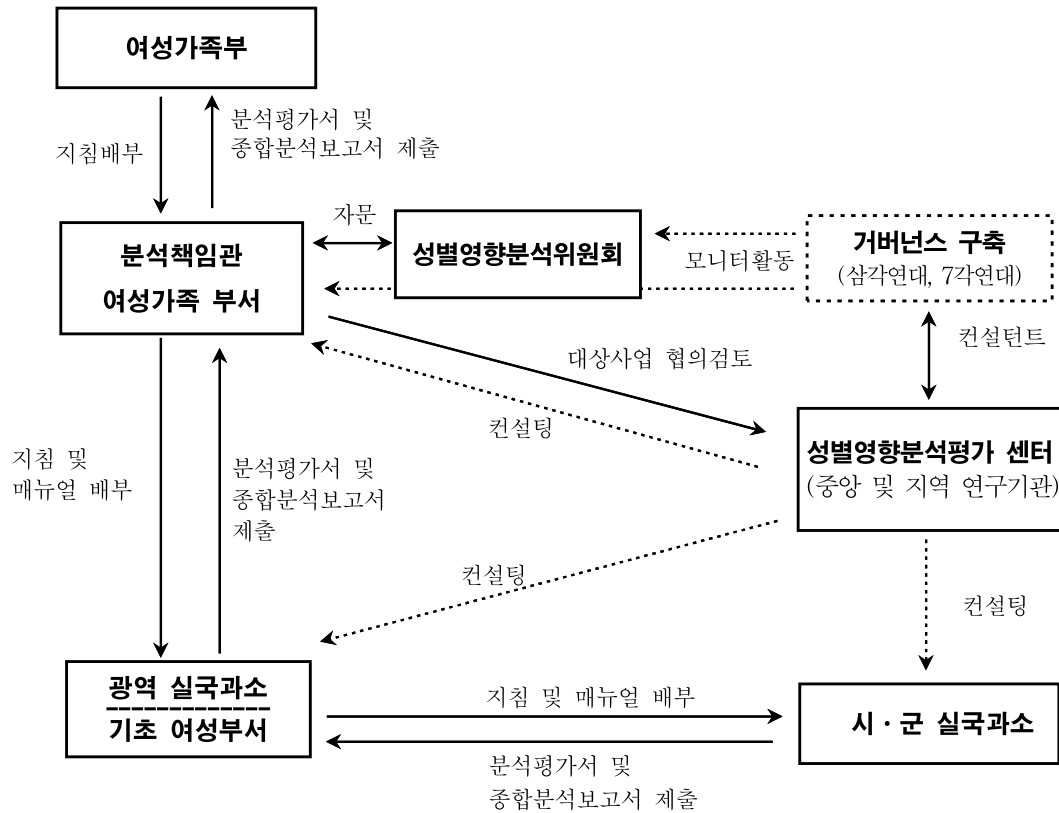
은 경우 여성정책추진협의회나 여성발전위원회 등 여성관련 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와 평가보고서 검토 그리고 정책개선사항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선정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과제선정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정책 환류에 의한 정책개선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총괄 및 수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표 5>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적용기관	모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li> <li>•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li> <li>•16개 시·도교육청</li> </ul>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기획 : 의제발굴 및 의제별 지정과제 선정</li> <li>•평가운영 :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li> <li>•제도개선 : 의제별 심층분석 및 개선안 도출, 평가결과 정책 개선 방안 점검 및 지원</li> <li>•평가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li> </ul>
각 부처담당	평가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 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내 평가 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 독려</li> <li>-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결과 종합</li> <li>-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별 정책개선 독려 및 실적제출</li> <li>- 과제담당자와 컨설팅트 연계지원</li> </ul> </li> </ul>
	평가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과제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과제별 평가 보고서 작성</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안 실행</li> <li>-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실적 작성 ※정책개선 사업담당자 작성</li> </ul> </li> </ul>
	성별영향 분석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 : 위원장(부기관장), 평가위원(공무원, 민간위원) 구성</li> <li>•운영 : 연3회 이상 개최</li> <li>•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li> <li>- 평가보고서 검토</li> <li>- 정책개선사항 실행 결과 점검</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선정 심사등</li> </ul> </li> </ul>
부처간 협의 기구	여성정책 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1회 보고</li> </ul>
지원기구	성별영향 평가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지원 : 전문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 <li>- 지역 : 12개지역</li> <li>※ 5개지역 4~5월 지정예정</li> </ul> </li> </ul>



<그림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흐름도

#### 4. 추진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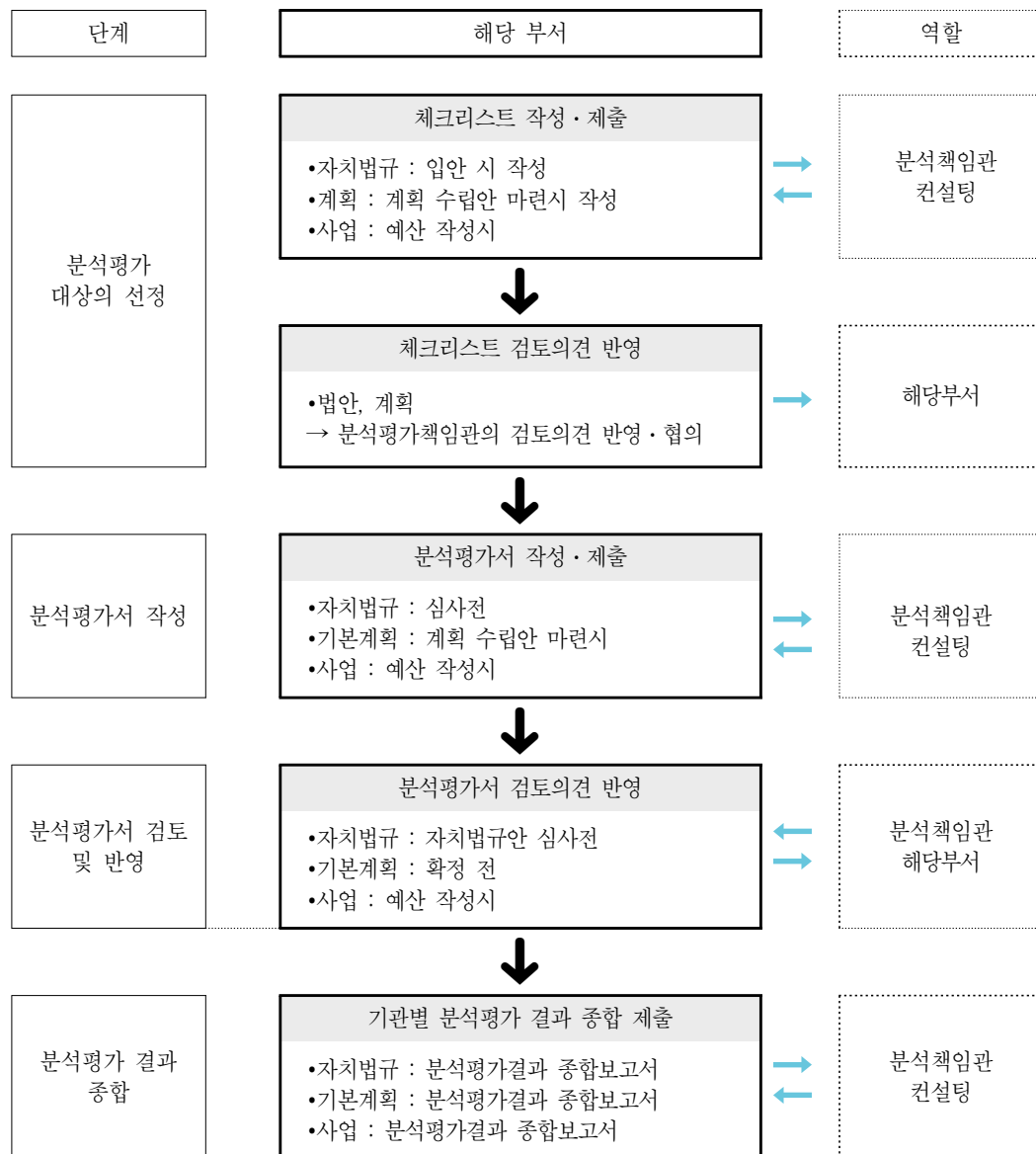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제도이다. 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 양성평등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정이 존재하기 보다는 해당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 양성평등하게 정책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단, 정책개선에 있어 법령 및 지침의 변경이나 예산이 수반될 경우 절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은 매년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중앙행정관서와 광역자치단체, 도교육청을 송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지침을 배부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한다. 선정과정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대상이 되는 계획, 기본계획,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자치법규는 제정시 수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과 사업은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후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된다.

<표 6>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절차



<표 7>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일정

일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법령	기본계획	사업
1월		수시분석		
2월	• 전년도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제출	○	○	○
3월				
4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	○
5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수시분석		○
6월		수시분석		○
7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수시분석		○
8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수시분석		○
9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수시분석		○
10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수시분석		○
11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수시분석		○
12월	• 익년도 기초자치단체 분석평가서 제출 - 여성가족부 제출	○	○	○

## 5. 분석지표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제도이다. 성 평등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분석의 기본 틀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체크리스트와 분석지표체계가 존재한다. 대상사업에 따라 지표체계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별현황을 분석한 후 성별로 격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점검한다. 성별격차분석은 절대적으로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구조적으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까지 분석해야 한다. 성별격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 후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표인 정책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관련법령·지침·규정 개선안, 사업수행방식의 개선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안, 성별통계 생산 항목 개선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정책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즉,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1) 자치법규 지표

자치법규 지표는 총 13개의 평가항목과 9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평가항목은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구성되어 있다.

<표 8> 법령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II. 성별 고정관념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II. 성별 특성 반영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2) 계획 지표

계획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중점과제, 4개 평가항목, 9개의 세부평가 항목 구성되어 있다. 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계획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I.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3. 성별형평성	⑤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⑥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⑦ 법령 반영 계획
		⑧ 예산 반영 계획
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는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 가능



### 3) 사업 지표

사업지표는 정책환경의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5개 평가항목, 9개의 세부항목이며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성별요구도, 사업의 성별형평성, 법령, 예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사업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⑧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향후과제

### 1. 성인지 예산 제도와의 연계

최근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 그리고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될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 주류화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예산제도가 함께 연동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방안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주류화 실행의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필요가 있다.

## 1) 양제도의 비전과 목표 설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비전	•정책의 품질 향상	•성인지 예산 확대 (여성관련 예산 확대)
목표	•모든 정책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투영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예산분석
지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수 •정책개선사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율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수 •성인지 예산 비율 •성인지 예산 교육비율
산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 도 과단위 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정책개선 사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피교육자 수/ 피평가부서 인원)*100	•성인지 예산 과제수/도 과단위 부서 •(전체 예산대비/ 성인지 예산)*100 •(성인지 예산 피교육자 수/피평가부서 인원)*100



비전	•생활공간 정책화(정책의 만족도 향상)
목표	•성인지 정책 및 예산 확대
지표	•과제대상 확대 •성인지 예산 확대 •공무원의 성인지력 교육 확대
산식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과제수 / 도 과단위 부서 •(전체 예산대비/ 성인지 예산)*100 •(전체 공무원 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교육인원 수)*100

## 2) 대상사업


### (1) 범위 및 단위

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범 위	•모든 정책	•모든 정책
	제외범위 •특정(성)만을 위한 정책	제외범위 •비예산사업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단 위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세부사업



연 계	•모든 정책의 세부사업 중심	
	제 외	- 비예산 사업 - 특정성만을 위한 사업

(2) 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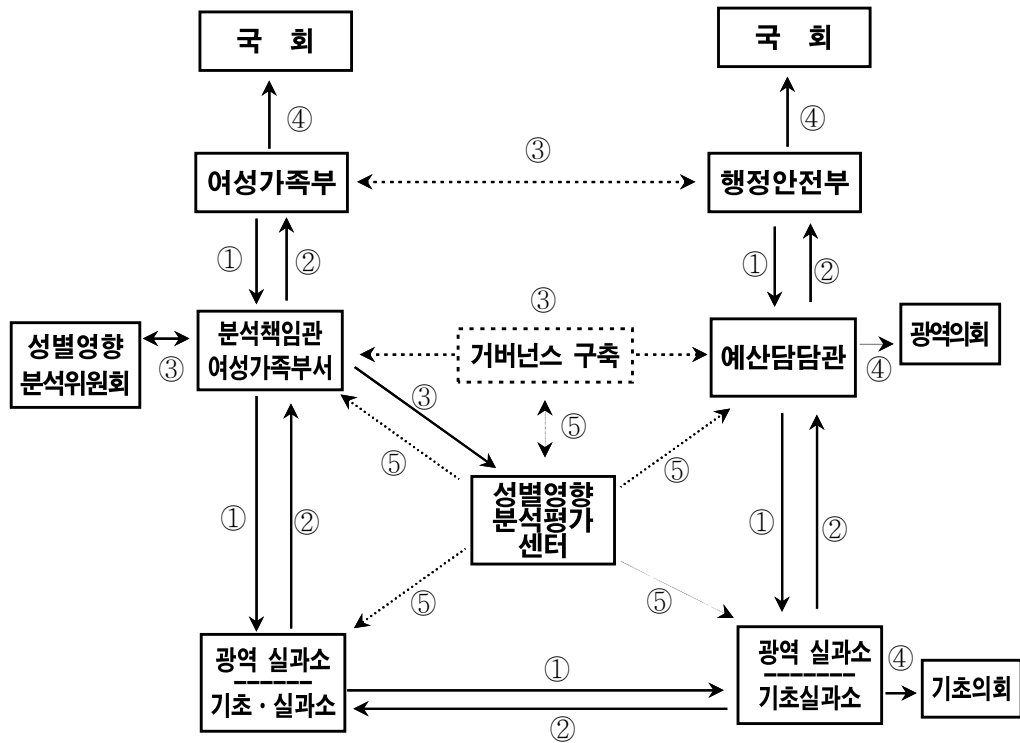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구분	성인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자치법규)</li> <li>•기본계획</li> <li>•사업</li> </ul>	필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한 사업</li> <li>•여성발전조례에 규정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li> <li>-여성정책시행계획 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여성부서 제공</li> <li>•자치구 여성부서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7.31까지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안부 훈령)」에 포함 통보</li> </ul>
	선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장 공약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li> <li>•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계획, 사업</li> </ul>	제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예산 사업</li> <li>•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운영비</li> <li>- 재무활동</li> <li>- 예비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장 공약사업</li> <li>•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li> <li>•성평등지수 낮은 사업</li> </ul>	필수사업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장 공약사업</li> <li>•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li> <li>•성평등지수 낮은 사업</li> </ul>	

### 3) 추진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예산서 작성
	1월	
•전년도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제출	2월	
	3월	•성인지예산 워크숍(행안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4월	•성인지예산 교육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대상사업 목록제출(예산부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시범작성 전산입력 •시범작성 제출(행안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5월	•시범작성 결과 개선보완 컨설팅
	6월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7월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행안부) •성인지 예산 담당 워크숍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8월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시달(도)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대상사업 목록제출(예산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9월	•성인지예산서 담당자 워크숍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10월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11월	•성인지 예산서 심의·의결
•익년도 기초자치단체 분석평가서 제출 - 여성가족부 제출	12월	•성인지 예산서 제출(의회)

#### 4)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비교	성인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li> <li>•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li> <li>•16개 시·도교육청</li> </ul>	<p>중앙 지방 교육청</p>	<p>대상 기관</p>	<p>중앙 지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li> <li>•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기획 : 의제발굴 및 의제별 지정과제 선정</li> <li>•평가운영 :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li> <li>•제도개선 : 의제별 심층분석 및 개선안 도출,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점검 및 지원</li> <li>•평가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li> </ul>	<p>여성 가족부</p>	<p>주무 부처</p>	<p>해정안 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 : 대상과제 선정</li> <li>•제도운영 :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li> <li>•제도개선: 개선안 도출, 평가결과 정책 개선 방안 점검 및 지원</li> <li>•평가종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 담당부서(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 정부 업무평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내 평가 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 독려</li> <li>-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결과 종합</li> <li>-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별 정책개선 독려 및 실적제출</li> <li>- 과제담당자와 컨설턴트 연계지원</li> </ul> </li> </ul>	<p>여성 관련 부서</p>	<p>총괄 부서</p>	<p>예산 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지침 보급 및 성인지 예산 교육 참여 독려</li> <li>- 기관의 성인지 대상 과제선정</li> <li>- 과제담당자와 컨설턴트 연계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과제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과제별 평가 보고서 작성</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안 실행</li> <li>-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실적 작성</li> <li>※ 정책개선 사업담당자 작성</li> </ul> </li> </ul>	<p>업무 담당자</p>	<p>수행 부서</p>	<p>업무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사업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서 작성 및 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 : 위원장(부기관장), 평가위원 (공무원, 민간위원) 구성</li> <li>•운영 : 연3회 이상 개최</li> <li>•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을 한 심의</li> <li>- 평가보고서 검토</li> <li>- 정책개선사항 실행 결과 점검</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선정 심사 등</li> </ul> </li> </ul>	<p>성별 영향 분석 평가 위원회</p>	<p>지문 및 협의 부서</p>	<p>여성 가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과제 협의</li> <li>•지침 및 매뉴얼 작성 협의</li> <li>•컨설팅 제공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li> </ul>	<p>국회</p>	<p>보고</p>	<p>국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 예산서 회계연도 60일전 국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li> <li>•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지원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li> </ul>	<p>연구기관</p>	<p>지원 기구 (컨설팅)</p>	<p>연구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li> <li>•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지원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li> </ul>



① 지침양식 송부 ② 분석서 및 예산서 제출 ③ 협의·조정 ④ 보고 ⑤ 컨설팅

<그림 3> 양제도의 추진체계 흐름

### 5) 지표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구분</li> <li>•성별고정관념</li> <li>•성별특성방연</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평등목표</li> <li>•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분야별 규모</li> <li>•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및 선정 이유</li> </ul>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 발생가능성</li> <li>•성별요구도</li> <li>•성별형평성</li> <li>•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li> </ul>	분석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수혜</li> <li>•예산구분</li> <li>•성별격차원인분석</li> <li>•향후추진계획</li> <li>•성평등 기대효과</li> <li>•성과목표</li> </ul>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성별요구도</li> <li>•사업의 성별형평성</li> <li>•법령</li> <li>•예산</li> <li>•사업</li> </ul>		

## 2. 법적근거 마련 및 정비

성주류화의 핵심적인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양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의회가 의결하고 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내에서(조례의 지역적 적용범위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인에게 구속적 영향을 미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최일선 행정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조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즉 조례를 통한 구체화 메카니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재 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특성이 다양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양이나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의 내용으로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정책의 결과가 재정성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창적이고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표 1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제11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2조(정의)	제1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3조(도의 책무)	제13조(정책개선 권고)
제4조(도민의 책무)	제14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5조(적극적 조치)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7조(분석평가 대상)	제17조(분석평가 교육)
제8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제18조(분석평가 자문)
제9조(분석평가의 시기)	제19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제10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제20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부칙

## 2) 성인지 예산 조례

<표 12> 성인지 예산 조례(안)

제1조(목적)	제8조(관련 기구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제2조(용어의 정의)	제9조(주민의 참여)
제3조(성 평등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제10조(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위원회)
제4조(성 평등을 위한 행정의 사무)	제11조(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 실시 후원)
제5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12조(벌칙)
제6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보칙
제7조(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평가)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 3) 여성발전조례 전면개정 : 성평등 조례

<표 13>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안)

	현 행	개정 (안)
조례명	여성발전조례	○○성평등조례
조례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시행계획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제7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8장 여성사랑방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시행계획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6장 성인지 예산 제7장 여성발전기금 제8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제9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10장 여성사랑방 제11장 보칙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행정체계 강화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조직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팀 신설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이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는 2007년에 설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원, 주요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관련부서인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부서의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인하여 업무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의 주요기능을 성평등 정책 구현으로 재정립하여 현재 여성관련부서명을 성평등과로 변경하는 방안과 성별영향분석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인력체계 강화 : 전문직위제 지정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크게 광역 및 기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 부서 인력과 광역 및 기초의 각 실과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담당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일차적으로 자문을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제담당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과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문을 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 수정을 요구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까지 한다. 따라서 총괄부서 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는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공 여부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갑숙, 2010).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상 인사이동 및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과제선정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전문직위제'로 정해 해당 공무원이 3년 이상 연속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여성정책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3) 예산확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 및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실행 워크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즉 지자체 차원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 관련하여 컨설팅, 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비 및 자문비 등의 확보도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기초의 경우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회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4. 성평등조정위원회 설치 : 단체장 직속

### 1) 단체장 직속위원회로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단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단순히 자문기구గా 아니고 심의·조정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심의와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와 조정기능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례, 계획, 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행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평등위원회는 집행기관(공무원), 의결기관(의회), 시민사회단체(NGO), 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여성복지국장, 산업경제국 등 주요 실국장이 참여해야 하며, 의결기관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연구자, 컨설턴트 등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단체장이 되며, 각 소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에 따라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다.

## 5. 분석평가책임관 : 개방형직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평가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역은 여성관련국 국장이 기초의 경우 여성관련부서 실과장이 담당하고 있다. 분석평가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정책 업무 담당자 7~8급이 분석평가책임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즉, 현재 분석평가책임관은 여성관련 국과장이며 대부분 공무원으로 젠더관점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빈번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업무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갖고 총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분석평가책임관은 개방형직위제로 운영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평가책임관을 개방위 직위로 보하고 성평등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전문성 강화

정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기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중앙과 16개 시도를 구분하여 중앙 센터와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설치되었다.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성주류화 실행 연구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성주류화 실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성주류화의 실행의 연구시점이나 추진현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나 방법론에 있어 대동소위하다.

지방정부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구조, 재정상태, 단체장의 젠더마인드,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 지역주민의 의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성주류화 실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전문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현재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인력은 여성가족부가 권고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및 연구, 컨설팅을 담당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전담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전담인력도 2012년 12월까지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담인력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 센터차원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전문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및 정책 변화 환경 및 젠더관점에 학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3) 컨설턴트 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법령,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다. 양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컨설턴트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컨설턴트의 경력, 활동상황, 젠더관점, 정책에 대한 이해 등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컨설턴트 양성 또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 7. 성평등 교육

### 1) 고위직 교육 : 단체장

성주류화의 실행의 주체로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체장을 비롯해 부단체장, 고위직의 경우 성주류화 교육을 실시하기는 제한이 있다. 또한 1~2시간 정도의 교육만으로 성인지력을 내재화 및 성주류화 정책을 이해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위직과 중간관리자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의 경우는 전문가에 의한 1:1코칭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2) 의원 및 의회사무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성주류화 관련 사항은 여성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여성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양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이 된다. 특히 성인지 예산 제도는 의회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 교육을 의회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정책을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초 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의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의회사무처 및 전문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3) 공무원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 직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3일 이상 교육 전 과정에 성주류화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되 교육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성민감성 훈련, 성별통계교육, 성인지 예산교육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와 지표적용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실습,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중 우수사례에서 사용한

지표 적용방법 등 구체적 실습교육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과제를 신청한 과제담당자는 튜터 지도 교육을 통해 최종보고서 작성시까지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1:1 튜터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

#### 4) 지역주민 교육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남녀 모두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8. 거버넌스 구축

모든 정책의 공급자도 정책의 제공자도 국민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듯이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해야 한다.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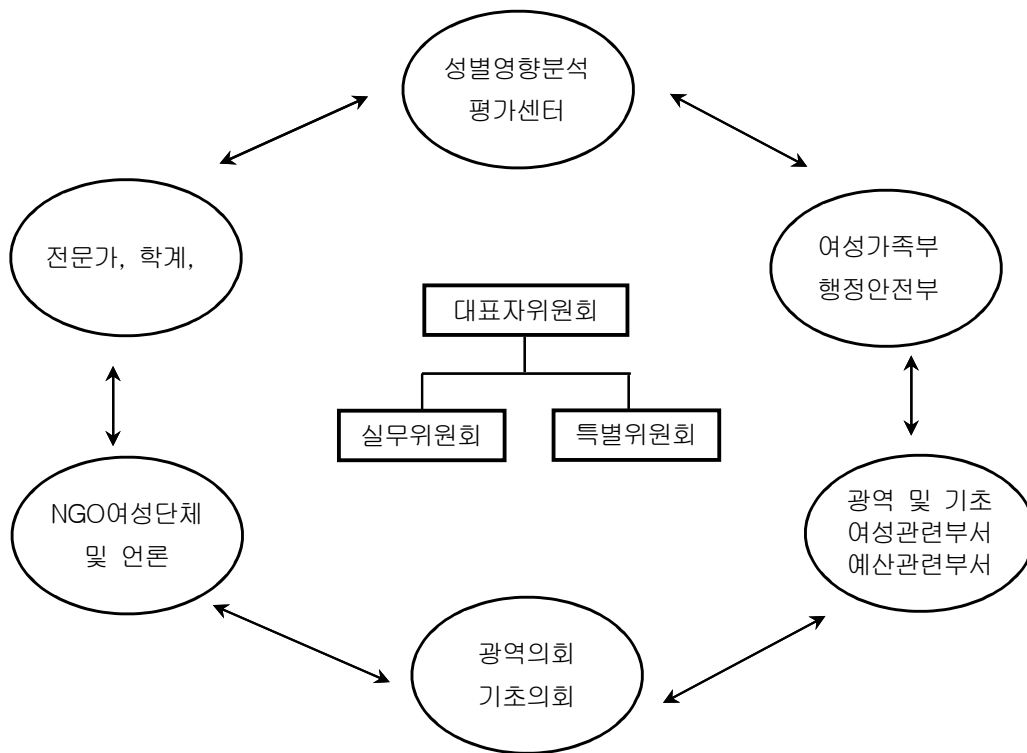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히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어느 성에게도 불평등하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결과가 투입에만 그치지 않고 최대한의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다.

성 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회,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March et al., 1999; Canada, 2001; Roggeband and Verloo, 2006).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NGO, 전문가 간의 삼자연대(velvet triangles, Woodward, 2004)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전문가, NGO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형태이고, 특히 NGO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며, 전문가는 부족한 상

태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도청, 전문가집단, 여성/사회단체, 언론, 타시도 지원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이 네트워크 구축은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참여가 가능한 조직부터 구성해 나가도록 한다. 각 기관의 대표자나 중간관리자로 구성되는 대표자위원회와 각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실무자회의를 두며, 시급한 사항이나 전략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각의 특징에 따라 그 역할을 제시하면 <그림 4>와 <표 14>와 같다.



<그림 4> 거버넌스 구축

<표 14>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

구 분		내 용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연구</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평가 및 환류</li> <li>- 심층과제, 우수과제 사례 발굴 및 체계적 관리</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과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li> <li>- 지역 전문가 발굴 및 양성</li> <li>-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 실시</li> <li>- 제도개선 및 환류 점검을 위한 워크숍</li> <li>- 단체장 및 부단체장 성인지력 교육</li> <li>- 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li> <li>- 도 민간위탁 사업기관 성인지력 교육</li> </ul>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li> <li>-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및 범위 확대</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실적을 위한 예산 반영</li> <li>- 성주류화 이행 결과 점검</li> </ul>
여성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사업까지 확대 법적근거 마련</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공통과제 제시 및 지침서 시달</li> <li>- 과제담당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li> <li>- 제도개선 및 환류 점검을 위한 시스템 마련</li> <li>- 정부, NGO, 전문가 간의 파트너십 구축</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 재정비</li> <li>- 성별분리 통계 생산</li> <li>- 지역 특성 고려 한 지역특색과제 발굴 선정</li> <li>- 관리직 및 부서장 성인지력 교육 적극 참여</li> <li>- 과제담당자 교육 및 튜터 참여</li> </ul>
예산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예산 과제대상 선정 및 지침서 시달</li> <li>-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li> </ul>
중앙 정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DB 구축</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제시</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예산 지원</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지정·개발</li> <li>-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연계 사업 추진</li> </ul>
여성/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발굴 제안</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위원 참여</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및 환류 점검 모니터링</li> </ul>
전문가 및 타시도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선정 및 보고서 작성 과제에 대한 자문</li> <li>- 튜터 및 컨설팅을 위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지표 적용 방안 기법 연구</li> <li>- 성주류화 관련 시도간 비교 연구</li> </ul>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 홍보</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및 환류 점검 모니터링</li> </ul>



## V. 나오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평등 정책 실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국적 기구(UN, OECD, EU) 및 원조기구(UNIFEM, UNDP)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며, 90여개 이상의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도입 당시 익숙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복잡하고 다양한 지표체계에 대한 몰이해,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불필요성 등이 제기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시민사회단체와 여성계의 노력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현시점에서 모든 국민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각 주체들은 진정성을 갖고 진지한 고민과 노력,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는 곧 성평등한 대한민국, 성평등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원도(201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종결과보고서, 강원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_\_\_\_\_ (2010).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종결과보고서, 강원도 여성가족과
- \_\_\_\_\_ (2010).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성과예산서, 예산담당관실
- \_\_\_\_\_ (2010). 2010~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담당관실
- \_\_\_\_\_ (2010). 2011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담당관실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0). 성별영향평가 튜터교육 워크숍 자료집 1~3
- 김경희·양애경·문유경·김돌순·송치선·남궁운영·박기남·류연구(2010).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_\_\_\_\_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대한민국정부(2010).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 \_\_\_\_\_ (2011).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 이갑숙(2012),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제정의 의미, 전국여성지방의원 동계워크숍 자료집,
- 이갑숙·최지연(2012),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매뉴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안희정(2011).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갑숙·임유경(2011).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안희정·이갑숙(2010).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환류 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안희정·김은(2010).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 적용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김은·김양희·박기남·임정규·최근화(2010), 2010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2009).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강문구·임유경·이소현(2009). 주요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임유경(2010).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갑숙·이향숙(2006).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
- 이갑숙(2008), 공무원의 성주류화 인식격차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 이재윤(2010).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미간행
- 여성가족부(2010a).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 \_\_\_\_\_ (2010b).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 \_\_\_\_\_ (201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1차 워크숍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 제1주제 토론 》

# 토 론 문

고보선\_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제1주제 토론 》

# 토 론 문

강경숙\_제주여민회 정책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센터장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센터장

## I. 들어가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김경희, 2008:3). 여기서 성 주류화란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채택한 주요 전략으로, 정책과 예산에 성 차이를 고려한 성 인지 관점의 통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성 주류화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니라 성별분리통계, 성 인지 예산 분석 등이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 과제 수가 47개로 확대되었다. 반면 제주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 확대와 달리 두드러지는 정책개선사례가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제수의 양적증가와 달리 개선이나 환류가 가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결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나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무원 내부에서 끊임없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GIA)의 배경은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해서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 인지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정책적

사고를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실천이 성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제도 발전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허나 지금까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책 과정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부분 집중함으로써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소홀한 경향도 없지 않았다.

본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을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여 지역 성 주류화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체계<sup>1)</sup>

### 1. 성 주류화 인프라

#### 1) 법적 기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조례 제301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조례 제359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조례(조례 제448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조례 제545호)’, ‘제주특별자치도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2564호)’,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2565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256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603호)’,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조례 제628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조례 제548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346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조례 제150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조례 제223호)’ 등 13개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 규칙(규칙 제8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40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3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64호)’ 등 4개의 규칙이 있다.

---

1) 본 글의 일부는 정영태외(2010)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미리 밝혀둠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성 주류화 정책 관련 규정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법적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gt; (제정 2007.1.10. 조례 제191호) (일부개정 2008.1.2. 조례 제3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목적</li> <li>성별통계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교육</li> </ul> </li>   <li>○ &lt;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gt; (제정 2008년 4월 2일 조례 제35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발의</li> <li>-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li> <li>-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 여성농업인 위촉 비율 40% 이상</li> <li>-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평가</li> <li>- 성별분리통계 생산 활용</li> </ul> </li>   <li>○ &lt;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gt; (제정 1999년 8월 7일 훈령 제717호) (폐지 2008년 7월 9일 훈령제7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의거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목적</li> <li>- 위촉직 위원 총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li> </ul> </li> </ul>

조례와 규칙 가운데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있어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핵심적인 도구들과 관련된 조항은 제3조(도의 책무),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 제11조(도정참여의 확대), 제14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등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기존 집행부 및 의회 등 발의가 아닌 주민 청원 발의로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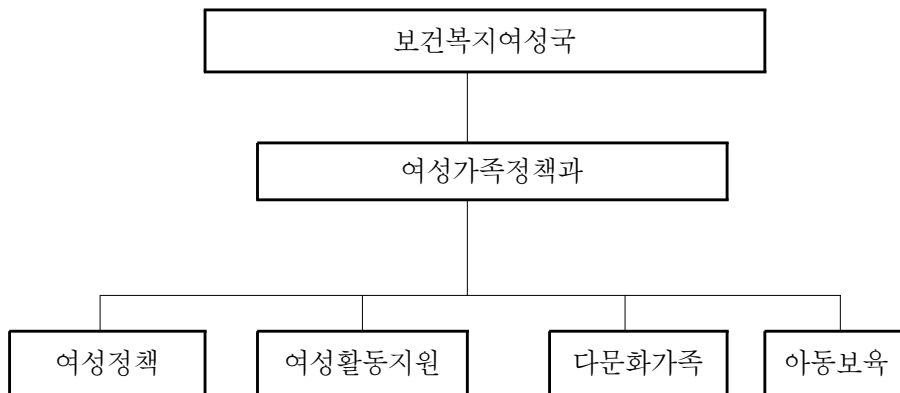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강화) 제1항은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비율 40% 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여성 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제2항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평가, 제3항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로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정책

을 추진하는데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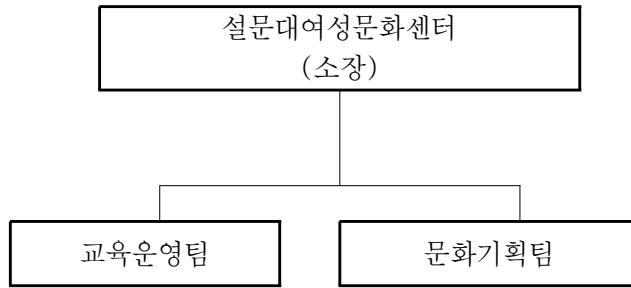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 주류화의 실천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등은 내용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추진 과정에 있어 책무성과 결과의 실천 및 환류가 지역 수준에 있어 미진한 상태이다.

## 2) 행정추진 체계

제주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추진 기구는 여성가족정책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단일 행정 체제가 출범 된 후, 두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2008년 여성정책과를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과로 개편하였다. 2010년 여성활동지원계와 가족지원계를 신설하였다. 201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를 여성가족정책과로 명칭을 개칭하고, 양성평등정책계를 여성정책계로 가족지원계를 다문화가족지원계로 각각 명칭을 바꾸었으나, 여성활동지원계와 아동보육계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력개발센터에 통합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2010년 1월 분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신설되었다.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기구표



<그림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구표

## 2. 인적현황

### 1) 담당인력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인력은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하였듯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차원에서는 여성가족정책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16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인력

(단위 : 명)

구분	여성가족 정책과	여성정책계	여성활동지원계	다문화가족계	아동보육계
인력	1명(과장)	담당 1명 3명	담당 1명 3명	담당 1명 2명	담당 1명 3명

### 2) 전문가 인력(연구기관)

여성정책 관련 전문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 기관 1개소가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 5월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원하였다.

2005년 5월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위탁사무를 통해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주요 업

무는 제주지역 여성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연구 개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양성평등지표 개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주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관련 연구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이다.

특히, 2012년 4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받음으로 제주 지역내 성 주류화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연구기관의 인력만으로는 성 주류화 문화를 확산하거나 연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역 내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을 모색하고 있다.

### 3) 시민단체 관련 활동·인력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여성단체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여성정책 쟁점을 부각시키는 등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토양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즉 활발한 시민단체의 여성운동이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하였으며,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 여성정책보좌관제 도입,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등 여성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매우 활발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11년 말 도단위 법인 11개 단체 34,372명, 비회원 단체 26,028명, 소그룹 47개 단체 25,307명이 회원으로 등록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주요 목적은 여성권익증진, 여성 사회활동 참여, 성차별 개선 등 여성인권보호와 여성정치·문화상당, 여성능력개발, 소비자보호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같이 다양한 여성단체들은 관련 연구 분야에서 지역 여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정책의 실천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장점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 가운데 제주여민회, 제주YWCA, 서귀포 YWCA,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의 기관은 매년 꾸준히 연구 사업과 함께 성 주류화와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의 경우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을 요구하면서 주민 발의를 통해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으로 제주YWCA는 “3.8여성의 날 기념 여성의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성의제

10대 의제 가운데 성 주류화를 의제로 포함시켜 각 정당은 물론 후보군에게 전달하였다. 그 밖에 여성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2010 지방선거 여성의제 네트워크”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당시 참여 단체로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WC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여성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 협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여성의제를 발굴 발표를 통해 각 정당과 후보군에 각각 전달되었다.

#### 4) 기타 지방의회, 언론 등

먼저,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 후보자<sup>2)</sup>가 1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도의원의 경우 선출직 29명 가운데 여성 입후보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7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의원으로 전체 비례대표의원 가운데 71.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선출직 여성의원의 비율이 8.1%인 반면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 평균 71.6%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선출직 여성의원은 매우 낮은 편이나,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전국 평균과 근접하고 있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당선자(민선3기~민선5기)

(단위 : 명, %)

연도	선출직			비례대표			교육의원		
	계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2	13	-	-	3	2	66.7	(제도 없었음)		
2006	29	-	-	7	5	71.4	5	-	-
2010	29	-	-	7	5	71.4	5	-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인 반면 위촉직만 살펴볼 경우 여성 위촉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2) 2010년 6.2지방선거에 있어 후보등록(2010.5.10) 결과 4명이 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예비후보 2명의 후보 등록을 했으나, 야권단일화선언(2010.5.10)에 따라 1명의 후보자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후보자는 예비후보에 그치고 말았다.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당연직 <sup>3)</sup>			위촉직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위원회 (154개)	2,457	1,857	6004 (24.4%)	624	578	46 (7.4%)	1,833	1,279	554 (30.2%)
중점관리 대상위원회 (30개)	526	372	154 (29.3%)	85	75	10 (11.8%)	441	297	144 (32.7%)
여성위원 40%이상위원회 (47개)	682	379	303 (44.4%)	155	130	25 (16.3%)	527	249	278 (52.8%)

출처 : 정영태(2012).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 3. 성 인지 통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통계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격년제로 발간하다 2010년 발간되지 못하였다. 이에 2011년 “제주여성가족통계”로 영역을 확대 11개 분야 358개 분야로 지표를 발굴 발간하였다.

2011년 발간된 “제주여성가족통계”는 기존 통계와 달리 보육, 교육, 해녀 등 제주에서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를 발굴 구성하는 등 지역맞춤형 통계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표 5> 제주지역 성 인지 통계 생산 현황

구분	제주지역
성인지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포함</li> <li>○ ‘제주여성통계’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가족, 교육 등 11개 분야, 정부 및 국가통계자료 가공</li> <li>- 225개 통계지표 작성</li> </ul> </li> <li>○ 2011년 “제주여성가족통계”로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 부문 358개 지표</li> <li>- 해녀, 보육 등 213개 지표 신규 발굴</li> </ul> </li> </ul>

3) 임명직은 당연직에 포함하였다.



#### 4. 성평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은 크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인지 예산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공무원 대상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 실시하고 있다.

<표 6>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현황(2005년~2011년)

(단위: 명, %)

구 분	합계	여	남	남성비율
2005	-	-	-	-
2006	-	-	-	-
2007	(4회) 309명	206	103	33.3
2008	(4회) 819명	327	492	52.4
2009	(4회) 672명	233	439	65.3
2010	(4회) 662	-	-	-
2011	(5회) 709	531	178	74.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각 년도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성평등 교육이 추진된 것은 2007년으로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관련 실무자 교육이 계기가 되었다. 과제 담당자를 위한 자체 교육을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최초 6회에 걸쳐 309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과제 담당자에서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 이유는 당시 과제담당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당해 과제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모든 정책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까지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보하고, 자체 역량강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착안되었다.

2007년부터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지표로 삼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운영형태라고 볼 수 있다.

### Ⅲ.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변화와 성과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영역변화와 성과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이 29개 과제, 2개 행정시가 18개 과제를 추진하여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경우 2005년 1개 과제를 시작으로 2006년 1개, 2007년 15개, 2008년 21개, 2009년 25개 과제, 2010년 24개 과제를 추진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구조체계에서 2009년부터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2009년 제주시 8개, 서귀포시 4개, 2010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8개 과제, 2011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9개씩 총 46개 과제 개 평가되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2006년~2011년)

(단위: 개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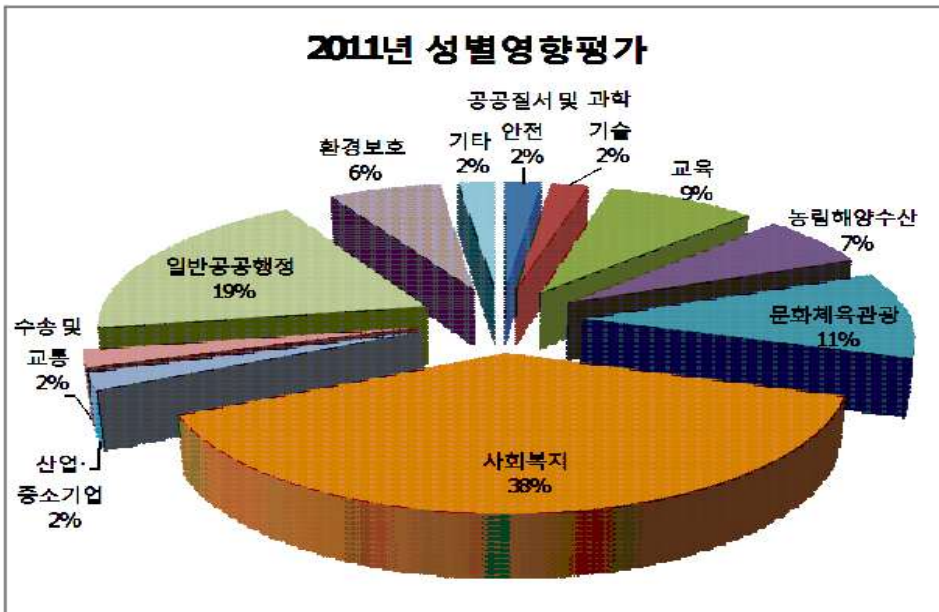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sup>4)</sup>	합계	광역	기초	합계	광역	기초	합계
제주	1		1	15		15	21	-	21	25	11	36	24	16	40	29	18	4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행정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으로 분류하면 과제의 분야별 편중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단일화로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나, 편의상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보고 있다.

<표 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BRM분석(2005~2011)

분류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질서 및 안전	-	-	-	-	1	1	1
과학기술	-	-	-	-	1	-	1
교육	-	-	3	2	5	6	4
농림해양수산	-	-	2	3	2	5	3
문화체육관광	-	-	1	1	4	8	5
보건	-	-	-	2	-	-	-
사회복지	1	1	4	8	9	8	18
산업·중소기업	-	-	2	1	-	3	1
수송 및 교통	-	-	1	-	1	3	1
일반공공행정	-	-	2	3	6	4	9
지역개발	-	-	-	1	2	1	-
통신	-	-	-	-	3	1	-
환경보호	-	-	-	-	2	-	3
기타	-	-	-	-	-	-	1
계	1	1	15	21	36	40	47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분야(BRM)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증가는 초기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2007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수가 대폭증가하면서 과제의 분야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영역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의 선정 등 과제를 선정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을 그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과제로 인식되었으나, 2007년부터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선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 선정, 추진체계, 예산 확보 등 성 주류화의 영역이 일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점을 전문가와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1년도 추진된 과제의 경우 BSC확대로 자발적인 과제평가 참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오히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아닌 과제가 제출되는 등 일부 평가 과제의 경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과제 선정 및 평가 부분에 있어 전문적인 코칭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성 인지적 정책 개선사례

2005년 1개의 과제를 시작으로 2011년 47개 과제가 평가되는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수준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자체를 평가하고자 한다.

전문가 집단에서 꾸준히 성별영향평가의 환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환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평가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이기 때문이다.

돌문화공원(201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성별영향평가(2009),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2009), 북스타트운동 성별영향평가(2009),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2008),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성별영향평가(2007)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초 1.2m 콘크리트 침터 정자→높이를 0.6~0.8m 낮춰 정비

<사진 1>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2009)

#### IV.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효과성을 위한 방안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SWOT 분석

제주지역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9>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성 주류화 기반 강화(성인지예산 도입)</li> <li>•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li> <li>• NGO간 활발한 네트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주류화 관련 빈약한 연구</li> <li>•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 지체</li> <li>• 일부 NGO중심의 성 주류화 담론</li> </ul>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li> <li>•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확보</li> <li>• 성별영향평가 교육 확대</li> <li>• 2013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주류화 저변 확산의 어려움</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어려움</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환류 연계</li> </ul>

## 2.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에 있어 개선 사항 및 환류 등의 질적 측면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함께 양적 확대를 통해 질적 향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2007년 15개 과제에서 2011년 47개 과제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과제 평가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2011년 BSC확대로 부서별 확대가 되었으나 정책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 지역의 과제 분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가 조례, 기본계획, 사업 등으로 확대되고, 평가 및 환류제출을 익년도에 수행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의지가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표 10>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정 과제

확대 안	담당 부서	과제 수	비고
1부서 1과제 원칙	- 부서별 교육과 부서 평가	200여개 과제	담당자 인센티브
1실국 1과제 원칙	- 사업소 포함 실과 포함	60여개 과제	심층과제 발굴

### 2) 성 인지적 제도 개선 및 환류 체계의 정립

제주지역의 성 인지적 제도 개선 및 환류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환류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환류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행 점검 및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과제, 조례, 중장기계획 등 상시 지원할 수 있는 환류체계 및 지원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이 지역적 차원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 등의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환류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다년도 평가 실시

환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년도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환류 실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년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평가를 적어도 3년~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성별분리통계와 성 인지 예산 등이 조례 개정 필요

관련 공무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시행령에 성별분리통계, 성 인지 예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 정책 등 성 주류화 정책의 목적, 추진체계, 의무 조항 등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가칭) 성평등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체계의 역할 및 정책성 등을 명시하고 등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5) 여성발전기금 활용

여성발전기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기금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 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에게 성별영향평가를 홍보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결국 여성단체에게 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기금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6)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발표회 실시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업무 관련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의 근무 성적표에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이를 인사 고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면 내용 공유와 이후 방향을 논의하는 보고회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전문가 및 성 주류화 실행 주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결과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주류화의 실행 주체로써 언론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7) 지속적으로 현장평가 및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서면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행정담당자에 의한 사업 평가가 아니라 주민들에 의한 제도 개선 및 환류의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 8)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및 교육 방식의 다양화

성 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교육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 전에 쉽고 편안하게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문화적 접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영화 상영 후 토론을 하는 등의 방식이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강의 방법에 적절하게 미디어 활용 및 참여식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강의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회의원 대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평등,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 인지 관점에서 행정의 감시 역할과 정책 반영 활동을 하도록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성 주류화 정책과 성 인지 관점에 대한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 9)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역할 강화 및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과소함에 따라 조례, 사업분석,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는 등 영역의 확대에 따른 컨설팅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전담인력 및 컨설턴트 확보, 예산 확대 등의 성별영향평가기관의 확대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역 차원의 성 주류화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의 강화, 성별분리통계, 여성지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성 주류화는 어느 특정 기관, 담당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각 주체들간의 역할을 이끌어 낼 때 제주지역이 성 평등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2007),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8),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외(2009),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정진주(2011),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2010),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강경숙·허지영(2011), 「201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강경숙(2010),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주도(2005), 제주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05), 제주도 주요업무보고
- 제주특별자치도(200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0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0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0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제2주제 토론 》

# 토 론 문

강수영\_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제2주제 토론 》

# 토 론 문

김경미\_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